

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·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소방활동 자료조사"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8조의 자료조사를 말한다.
2. "소방용수·지리조사"란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현장활동을 위한 관내도로, 지리 및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화재의 경계, 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기본원칙·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.

제2장 소방활동 자료조사계획

제4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)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

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·지리조사 계획(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소방용수·지리조사 카드 정비, 관리 포함)
2. 소방력 확보(인력, 장비, 용수, 소방시설) 및 상황별 배치·운용 계획(주요 취약대상 진압작전도 포함)
3.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
4.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
5. 인명구조·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

제5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는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,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·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한다.

③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자료조사자의 자격) ① 119안전센터·119구조대 또는 119지역대에

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진

다.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화재안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장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

제7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
2.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, 구조, 관계설비의 현황
3.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, 구조,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(무비 카메라, 비디오, PDA 등)로 촬영할 수 있다.

③ 자료조사팀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업무(영업)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소방훈련과 병행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펌프차 1대를 포함하여 당번근무자 2명 이상으로 자료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

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,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,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: 연 1회 이상
 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의 2급,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: 2년에 1회 이상
 3. 제1호·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: 필요시
- 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(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)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·구조·용도·피난계획·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
2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
3.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

방법에 관한 사항

4. 소방용수시설의 기준,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
5.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 사항
6.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,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
7.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(건축물 포함)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
8. 소방차 부서, 옥내소화전 점령, 건물진입, 인명구조,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

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·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) ①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화매체(PDA, 디지털카메라, 전자문서 등)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등) ①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·정리하여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

여야 한다.

②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.

제4장 소방용수·지리조사

제12조(소방용수·지리조사 실시)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·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.

1. 정밀조사 : 연 2회(해빙기, 동절기)
2. 정기조사 : 월 1회 이상
3. 수시조사 : 도로공사를 한 경우,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, 취약지역 등
4. 조사방법은 「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」 제22조에 따른다.

제13조(소방용수·지리조사 결과조치) ① 소방서장은 소방용수·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세부시행기준의 위임)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

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
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
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
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
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방활동 정보카드

1. 건 물 개 황

① 관 리 번 호		② 주 용 도		③ 상 호	
④ 소재지		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	소방서 km 119안전센터 km(관할) 119안전센터 km(최단거리)	
⑥ 소방용수시설	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			
⑦ 건물구조		조 지하 층 / 지상 층 / 동			
		연면적 m ² / 바닥면적 m ²			
		◦ 특별피난계단수 : ◦ 피난계단수 : ◦ 일반계단수 : ◦ 옥외계단수 : ◦ 승강기(비상) : ◦ 승강기(일반) :			
⑧ 관 계 인 등	소 유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관 리 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소방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	위험물안전관리자	성 명 : / 연락처 :			
⑨ 위 험 물 시 설 등	구분	시 설 명 (제조소 구분, 류별 등)	품 명	수 량	
	위험물 시설				
	가스취급 현황				
	특수 가연물				
	기 타				
⑩ 층 별 현 황	구 분	용 도	면적	소방시설 설치현황	기타
	층 별				

2.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(소화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 및 위험물 등 설치 위치도)

- ① 층별 다수인명피해 발생우려 시설 등은 도면에 표기(다중이용업소, 중환자실 등)
- ② 공동주택 등 여러 동으로 구성된 대상물의 경우 동별 위치도 작성 및 위치도에 위험시설의 설치 위치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화재진압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

⑪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

(건축도면을 활용)

3. 정보카드 작성(수정) 및 자료조사자

[illegible]

[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기입요령]

(1) 관리번호

대상명의 첫 글자가 『가, 나, 다, . . . 순』에 의하여 『가』의 경우 1-100, 『나』의 경우 101-200과 같이 여유번호 두고 부여

(2) 주용도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『특정소방 대상물』 분류에서 대상물의 주 용도를 기재

(5) 소방대상물과의 거리

소방서, 관할 119안전센터, 최단거리 119안전센터와의 거리를 기재

(6) 소방용수시설

소방대상물 주변의 소방용수시설의 관리번호 및 거리를 기재

(7) 건물구조

건축물대장 등 확인하여 구조 및 면적 등을 기재

(8) 관계인 등

- 소유자 :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
- 관리자 :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
- 소방안전관리자, 위험물안전관리자 :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자로서 유사시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

(9) 위험물시설 등

해당 건물 내 설치된 위험물 시설, 가스취급(대형 LPG탱크 등), 특수 가연물 취급 사항을 기록(설치위치, 수량 등을 기재)

(10) 층별 현황

- 용도 : 해당 층의 주 용도를 기록(예시 : 병실, 노래방, 주거시설 등)
- 면적 :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후 해당 층의 바닥면적을 기록
- 소방시설 설치현황 : 해당 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재

(예시 : 옥내소화전, 피난기구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기재)

(11) 동별 위치도 및 층별 평면도

- 건축도면 등을 활용하여 해당 층에 설치된 소화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 설비, 위험물 등 설치 위치 및 다수 인명피해 우려 시설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화재진압 정보로 활용
- 공동주택 등 여러 동으로 구성된 대상물의 경우 동별 위치도를 작성 및 위치도에 위험시설(위험물 탱크, 대형 LPG탱크 등)의 설치 위치 등을 도면에 표기

(12) 작성자

-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주요내용과 작성자의 이름을 기록

소방활동 자료조사서

1. 일반현황

대상명		위 치		전 화	
소유자		관리자		소방안전 관리자	위험물안전 관리자
주용도		취 약 장 소			
건 물 구 조	조 지하 층 / 지상 층 / 동 연면적 m² / 바닥면적 m²				
특 이 사 항					

2. 조사사항

구 분	자료조사 내용
소방대상물과의 거 리	본서 km / 119안전센터 km(관할) / 119안전센터 km(최단거리)
소방용수시설 현 황	호 km / 호 km / 호 km / 호 km
소방시설 활용여건 (소화활동설비)	
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설비 활용 장애요인	
소방차 긴급통행 등 소방활동 장애요인	

